

민영교도소 도입반대 운동

관련 자료 모음

< 목 차 >

1. 990918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과 관련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을 제안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 990915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민교협, 민주법연,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3. 990928 민영교도소 제도도입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검토결과 통지/ 법무부
4. 030211 법무부의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반박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5. 030211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6. 한국기독교교도소/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7. 981127 행형법 개정 및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법무부
 - 7.1. 행형법 개정방향 - 수형자의 인권신장과 교정질서확립을 중심으로 - / 강영철(단국대학교, 법대교수)
 - 7.2.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이윤호(경기대 교수, 범죄학박사)
8.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의견서 검토결과(제출자: 대한불교조계종)/ 법무부교정국
9.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경과 및 종단대응
10. 정부의 민영교도소 추진, 방관만 할 것인가?/ <실천불교> 통권 제14호 '진단'
11.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12.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2001.1.28. 법률 제6206호.)
13.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0.11.9. 대통령령 제16996호)
14.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법률부령 제506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인권운동사랑방

< SARANGBANG >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사랑방 홈페이지: <http://www.iworld.net/~rights> E-mail: rights@chollian.net

수 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NCC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각 단체 인권담당)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담당: 고근예 741-5363)

내 용 :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과 관련**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을 제안합니다

날 짜 : 1999년 9월 13일

참 조 : 총 4매

1. 우리 사회 민주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민영교도소 도입 발표에 이어, 올 7월에는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에 관한 논의는 98년 11월 단 한번의 공청회만 진행되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개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더욱 현재 진행중인 법무부의 교도소 민영화 방침은 자칫 경제 논리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려, 현 시점에서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7개 인권·사회단체(민변, 민가협, 고난모임, 사회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가 법무부에 제출(99년 7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을 여전히 서두르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4. 민영교도소에 관한 사회단체 의견은 각 정당 정책위와 청와대, 법무부로 보낼 예정입니다. 첨부하는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공동명의 참여 의사를 9월 14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민영교도소 제도의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1. 재소자의 교정교화는 경제논리로 밀려날 수 없는 국가의 고유 책무입니다.

① 형벌의 집행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정의의 실현이지만, 더욱 강조해야 하는 최종적 목표는 재소자의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입니다. 국가의 교정교화 업무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사(私)기관에 맡기게 될 때, 교정교화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국가에 부여된 당연한 책임을 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② 민영교도소가 재소자 처우 개선과 향상을 불러 올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기대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자선으로 시작된 민영교도소 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민영화는 이윤창출을 목적에 두고 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교도소 민영화로 기대했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감시와 지적이 없이 위탁자 스스로 재소자를 위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교도소가 민영화되고 이를 운영하는 위탁자가 정부의 지적사항 이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2. 사(私)기관화된 교도소는 국민의 감시와 국가의 책임선을 벗어 납니다.

①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된 교도소 즉, 사적 공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교도소내 시스템에 대해 주권자로서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에도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런 교도소가 민영화될 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어, '사업상 기밀'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②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건이나 폭동 등의 사고 발생시에 국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직원(교도관)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소자와 사기업 간의 다툼으로 한정되어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해 질 것입니다.

3. 형벌의 집행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고유 업무입니다.

① 형벌의 부과와 집행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규율을 정하는 권한과 그의 실행은 오직 국가

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며, 재소자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감금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국가만이 실행할 수 있는 유사 사법상의 일입니다.

수감자를 징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형량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수감자의 등급을 매기는 권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종교적인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수용자의 신상기록에 접근해서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권한, 강제로 노동하도록 하는 권한 등을 위탁자가 갖게 될 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형벌의 부과는 국가에서만 하고 형벌집행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즉, 형벌의 집행과 부과(allocation)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가석방, 독방구금 등과 같이 집행의 성격을 갖으면서 형벌 부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자의 영향을 받게되고, 이는 형벌부과와 집행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 정의를 실현하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국민에 의해 오직 국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그들의 권한을 국가에 위임하고, 이러한 계약아래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의 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겼을 때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허락하고 이는 근대 국가를 이룬 사회계약의 기본입니다. 교도소의 민영화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사회계약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민영교도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교도소의 직원은 교정 전문직 공무원이고, 이는 국제 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교정 공무원에 의한 교도소 운영에서도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비전문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교도소의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양지마을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 시설내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한데, 재소자라함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으로 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보다 인권보장이 훨씬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도소의 민영화는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하기 쉬운 재소자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5. 민영교도소제도는 외국에서도 극히 예외일 뿐입니다

민영교도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유럽에서는 민영교도소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념·법 철학의 문제제기와 함께 그 폐해를 우려해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델란드, 프랑스 등에서 교도소 운영의 일정부분 즉, 교육, 부식, 작업 등 만을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반민영의 형태를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의 민영교도소는 대부분 전문 교정회사에 의해 영리로 운영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 교도소가 교회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나 이는 재정지원, 자원봉사 인력, 교화프로그램 등 종교단체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민영 교도소는 앞서 거론한 민

영교도소의 문제를 상당부분 빗겨갈 수 있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특수한 경우이고 따라서 교정 행형 전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6. 국제 인권법에서도 교도소는 공공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① 유엔 폐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46조3항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② 유럽형사시설규칙(Recommendation No. R(87)3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Prison Rules)

54조2항 교정직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상근의 전문 직원으로서 임명되어야 한다.

③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제2조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7. 정부는 민영교도소 관련 설치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① 교도소의 민영화는 앞서 밝혔듯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의 중요 책무임에 따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적 논의·합의가 가능한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② 외국에서도 교도소의 민영화는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법무부는 완전 민영교도소의 법제정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선 비보안 교정시설이라든지 교도소의 일정부분에 대한 민영화를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가능성과 성공여부를 따져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③ 민영교도소 설립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구 속 수사의 원칙과 보석의 확대 등 다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수 신: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상임 공동 대표 손호철 - 교수)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장 박병섭 - 교수)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상임 공동 의장 임기란 - 인권운동가)

사회 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대표 김진균 - 교수)

실천 불교 전국 승가회 (대표 청화 - 스님)

인권 실천 시민연대 (운영 위원장 김녕 - 교수)

인권 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 - 인권운동가)

7 개 인권 단체

간사 단체 인권 운동 사랑방 (연락 고근예 741-5363)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 741-5363, 전송 741-5354

제 목: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날 짜: 1999년 9월 15일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법 개정안과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하였고, 이번 정기 국회에 이들 법률안은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부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소자의 교정교화는 경제논리로 밀려날 수 없는 국가의 고유 책무입니다.

① 형벌의 집행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정의의 실현이지만, 더욱 강조해야 하는 최종적 목표는 재소자의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입니다. 국가의 교정교화 업무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사(私)기관에 맡기게 될 때, 교정교화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국가에 부여된 당연한 책임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② 민영교도소가 재소자 처우 개선과 향상을 불러 올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기대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자선으로 시작된 민영교도소 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민영화는 이윤창출을 목적이 두고 있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교도소 민영화로 기대했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은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감시와 지적이 없이 위탁자 스스로 재소자를 위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경제논리에 따른 교도소 민영화, 이를 운영하는 위탁자가 정부의 지적사항 이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2. 사(私)기관화된 교도소는 국민의 감시와 국가의 책임선을 벗어 납니다.

①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된 교도소 즉, 사적 공간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교도소내 시스템에 대해 주권자로서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에도 미흡한 부분입니다. 교도소가 민영화될 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적영역으로 분류되어, ‘사업상 기밀’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②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건이나 폭동 등의 사고 발생시에 국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직원(교도관)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소자와 사기업 간의 다툼으로 한정되어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해 질 것입니다.

3. 형벌의 집행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고유 업무입니다.

① 형벌의 부과와 집행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규율을 정하는 권한과 그의 실행은 오직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며, 재소자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감금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국가만이 실행할 수 있는 유사 사법상의 일입니다.

수감자를 징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형량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수감자의 등급을 매기는 권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종교적인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수용자의 신상기록에 접근해서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권한, 강제로 노동하도록 하는 권한 등을 위탁자가 갖게 될 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형벌의 부과는 국가에서만 하고 형벌집행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즉, 형벌의 집행과 부과(allocation)를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가석방, 독방구금 등과 같이 집행의 성격을 갖으면서 형벌 부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자의 영향을 받게되고, 이는 형벌 부과와 집행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 정의를 실현하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오직 국민에 의해 국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그들의 권한을 국가에 위임하고, 이러한 계약아래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의 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겼을 때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허락하고 이는 근대 국가를 이룬 사회계약의 기본입니다. 교도소의 민영화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정부에 부여된 사회계약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민영교도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교도소의 직원은 교정 전문직 공무원이고, 이는 국제 인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 교정 공무원에 의한 교도소 운영에서도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비전문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교도소의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양지마을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 시설내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기 쉬운 재소자는 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올 위험이 있습니다.

5. 민영교도소제도는 외국에서도 극히 예외일 뿐입니다

민영교도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유럽에서는 민영교도소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이념·법 철학의 문제제기와 함께 그 폐해를 우려해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교도소 운영의 일정부분 즉, 교육, 부식, 작업 등 만을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반민영의 형태를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의 민영교도소는 대부분 전문 교정회사에 의해 영리로 운영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 교도소가 교회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교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나 이는 재정지원, 자원봉사 인력, 교화프로그램 등 종교단체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민영 교도소는 앞서 거론한 민영교도소의 문제를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지만, 이는 브라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특수한 경우이고 따라서 이는 교정 행형 전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6. 국제 인권법에서도 교도소는 공공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 ①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46조3항 직원은 전문 교정공무원으로서 상근체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② 유럽 형사시설 규칙(Recommendation No. R(87)3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Member States on the European Prison Rules)

54조2항 교정직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상근의 전문 직원으로서 임명되어야 한다.

③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제2조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7. 정부는 민영교도소 관련 설치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기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① 교도소의 민영화는 앞서 밝혔듯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의 중요 책무임에 따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적 논의·합의가 가능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② 외국에서도 교도소의 민영화는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법무부는 완전 민영교도소의 법제정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선 비보안 교정시설이라든지 교도소의 일정부분에 대한 민영화를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가능성과 성공여부를 따져 가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③ 민영교도소 설립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보석의 확대 등 다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전화 (02)507-568개 / FAX (02)502-0129
교정과 과장 김화수 교정감 김태훈 담당자 신경우

문서번호 교정 61401-16

시행일자 1999. 9. 28

공개여부 ()

수신 인권운동사랑방(고근예)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 | | | | |
|-----|----------|--|-----|--|
| 선결 | | | 지시 | |
| 접수 | 일자 시간 | | 결재 | |
| 번호 | | | · | |
| 처리과 | | | 공 | |
| 담당자 | | | 람 | |
| 심사자 | | | 심사일 | |

제 목 민영교도소 제도도입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검토결과 통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민영교도소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붙임 민영교도소 제도도입에 대한 공동의견서 검토결과 1부. 끝

법무부장

전결 교정국장 이순길



민영교도소 제도도입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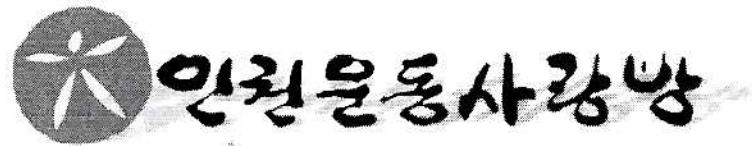
-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법무부교정국

| 제출자 | 제출 의견 | 검토 의견 |
|---------------------|--|--|
| 인권운동사랑방등 7개 인권단체 | <p>1. 재소자의 교정교화는 경제논리로 밀려날 수 없는 국가의 고유 책무임</p> <p>2. 사기관화된 교도소는 국민의 감시와 국가의 책임성을 벗어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운영교도소 또는 민간운영 교도소이건 구분 없이 재소자 교정교화는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교정행정의 목표임. 민영교도소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동등 이상 수준의 교정서비스 제공 및 행형법령, 법무부의 지시·예규·훈령 등 준수가 강제됨 ○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충분한 감독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시행한다면 민영화가 된다고 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는 없을 것임 ○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형벌집행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및 법인의 임·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불법 행위발생시 배상을 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 제출자 | 제출의견 | 검토의견 |
|---------------------|---|---|
| 인권운동사랑방등 7개 인권단체 | 3. 형벌의 집행은 형벌의 부과와 분리될 수 없는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고유업무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가에 위임된 형벌권 중 형벌권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민의 동의(법률)에 의해 재위임 하는 것은 사회계약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민영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허가는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고, 독방구금은 수용의 방법이지 형벌의 부과로 볼 수 없으며,民間에 의한 형벌집행의 부작용은 엄격한 감독장치를 통해 예방이 가능함 |
| | 4. 민영교도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교도소내에서 예견되는 인권침해사례의 예방을 위하여 감독관 파견, 수시 또는 정기감사, 법령위반시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계약의 해지, 해임명령, 손해의 구상권, 벌칙조항 등 충분한 감독장치가 법안에 보장되어 있음 ○ 민영교도소 직원의 자격요건을 교정직공무원과 동등이상으로 정하여 무자격자가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등 민영교도소의 원활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 제출자 | 제출의견 | 검토의견 |
|---------------------|---|---|
| 인권운동사랑방등 7개 인권단체 | 5. 민영교도소제도는 외국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교도소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미국의 경우 15개의 교정회사에서 161개 교정시설 및 약 12만명의 수용자(전체 수용인원의 약5%)를, 영국은 3개의 교정회사에서 12개 교정시설 및 수용자 8,000여명(전체 수용인원의 약 8%)을, 호주는 3개 교정회사에서 12개 교정시설 및 약 4,700여명의 수용자(전체수용인원의 약3.8%)를 관리하고 있음 |
| | 6. 국제인권법에서도 교도소는 공공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 재소자에 관한 국제규칙 등은 민영교도소 태동시기인 1980년대 이전에 제정된 권고사항으로서 본제도의 시행여부는 해당국의 교정환경, 국민의 태도 등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될 사항임 |
| | 7. 민영교도소 관련 설치법률의 제정 전토론회·공청회와 시험적인 운영이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을 위하여 우선 법안제정을 추진 중이며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시행령 제정,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표준공개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작성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함 ○ 그 외에도 수용시설 공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기간은 법안 통과 후 수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 더욱 광범위한 여론 수렴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히 시행될 것임 |



< SARANGBANG >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호 3층 대표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수 신 :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담당: 유혜정 02-741-5363)
내 용 : 법무부의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반박 성명
날 짜 : 2003년 2월 11일
비 고 : 2매

<성명서>

지난 5일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추진이 국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일이며, 민영교도소 수용자들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는 제대로 논의된 바도, 검증된 바도 없다. 2000년 현재 교도소 수감자 6만8천여명 중 미결수용자의 수는 무려 40%를 넘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반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도소의 신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위주 수사관행의 전면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과밀수용의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는 징역 혹은 금고형 중심의 '형벌 집행 관행'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민간 기법 등을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출곧 교도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통로를 차단해 왔다.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 ‘형벌권’ 자체의 민간이양이 아니라, 교도소 운영의 투명화부터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부패의 우려도 크다. 아울러 형벌집행 및 보안유지를 위해 물리력이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현존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하물며 민영교도소는 더욱 더 공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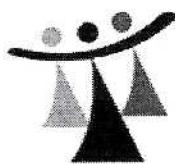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신앙적 갓대가 수용자들의 판단하는 작용될 위험성이 높후하다.

이처럼 사실상 형벌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한 형기단축이 가능한 현실에서 형벌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요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부패 등의 문제소지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 교도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일, 나아가 수용자 처우와 인권신장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에 착수하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상



문서번호 :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참 조 : 법조출입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성명서>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재고되어야한다
전송일자 : 2003. 2. 11(금)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3매

<성명서>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재고되어야한다

법무부는, 2003. 2. 4.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 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아가페는 포괄위탁방식으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며 계약기간은 12년이고, 법무부는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형사처벌은 공권력 행사의 최후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치국가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는데, 형벌집행권이 사인에 의해 행사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 ‘경제성과 효율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전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경제성의 문제를 인건비 절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에서도 전자감시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종교재단의 지원을 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하여,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밖에 없고,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영교도소에도 징벌 집행권, 계구·강제력·무기 사용권이 부과되는 등 강한 규율 권한이 부여되는바, 법치국가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민영교도소를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현실을 보건대, 국가의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영 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으로 나갈지 의문이다. 그리고 민간 교도소 운영자는 독자적인 교정 업무를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막고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운영될 것이기에 국가 및 국민에 의한 통 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당초 종교재단이 선한 목적으로 민영교도소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이나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도 형 집행에서의 공공성 및 법치국가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따르는 전문 교정 공무원이 상근제에 기초하여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해소를 위하여 민영교도소를 추진한다고 하나, 민영교도소의 신설이 오히려 전체 수용 인원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밀수용문제는 엄격한 불구속수사 원칙 및 보석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이나 탄력적인 교화 프로그램은, 지금 까지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형벌권 이양과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교도소 전체를 민영화하기보다는 교육 및 주·부식업무 등만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정업무의 전반적인 위탁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설립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도소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 연혁

1995년도

1. 제1차 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5년 10월 16일(월) 오후6시, 한기총 사무실
- 2)회의안건
 - 1)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 개획수립
 - 2)추진위원회 조직
 - 3)회무처리
 - 1)추진위원회 조직, 위원장-이종윤 목사, 부위원장 등 임원 선임 위원장에게 위임
 - 2)월례회의 결정, 일시-매주 첫 주일 다음의 금요일 오전7시, 장소-한기총 사무실

2. 제2차 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5년 11월 10일(금) 오전7시, 한기총 사무실
- 2)주제발표
 - 1)발제 : "브라질 휴마이타교도소가 한국기독교교도소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2)발제자 : 이정찬 목사(한국교정선교회장)
- 3)회의안건
 - 1)세미나 개최계획
 - ①신학세미나-기독교교도소의 '기독교'에 관한 세미나(과연 어떤 행형제도가 성경적인가?)
 - ②법학세미나-과연 행형제도에 특정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2)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단계별 기본전략 모의
 - ①미성년범죄자 수용기관, 중간처우의 집 등 경구금시설의 운영
 - ②시장 경쟁력을 갖춘 교도작업의 현실화
 - 3)임원조직 보고
위원장-이종윤 목사, 부위원장-양인평 장로, 서기-전종인 장로, 간사-김용진 집사

3. 제3차 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5년 12월 8일(금) 오전7시, 여전도회관 1013호
- 2)주제발표
 - 1)발제 : "기독교와 감옥제도-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관"
 - 2)발제자 : 김용진 집사(법죄학 박사, 한동대 협력교수)

1996년도

4. 제4차 위원회의

1)일시 및 장소 : 1996년 2월 23일(금) 오전7시, 여전도회관 1013호

2)주제발표

1)발제 : "종교와 교정교학의 새로운 국면"

2)발제자 : 김용진 집사(범죄학 박사, 한동대 협력교수)

3)회무처리

1)신학세미나 개최 확정

①일시 : 1996년 3월 29일 오후2시

②강사 : 강사문 교수, 김정우 교수, 이종윤 박사

2)김용진 교수가 연구차 유럽교도소를 방문하기로 함

3)청소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을 계획하기로 함

4)지금까지의 연구와 결과를 정리하기로 함

5)실무간사(이상진 목사, 2월 28일자 임용) 채용 의결

5.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 세미나

1)일시 및 장소 : 1996년 3월 29일(금) 오후2시, 여전도회관 2층 강당

2)주제 : "형벌과 교정에 관한 성서적 이해"

3)강사, 주제발표-강사문 교수(장신대 구약학)

토 론-이종윤 목사(본회 위원장), 주명수 목사(변호사)

6. 제5차 위원회의

1)일시 및 장소 : 1996년 6월 7일(금) 오전7시, 한기총 사무실

2)주제발표

1)발제 :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

2)발제자 : 김용진 집사(범죄학 박사, 한동대 협력교수)

3)회의안건

1)기독교교도소를 위한 법학세미나 준비-가칭 "기독교교도소 개소를 위한 법률적 고찰"

2)소년보호시설 개소안

3)기독교교도소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4)회무처리

1)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기독교교도소 설립계획을 7월까지 완성하기로 함

2)기독교교도소 운영사항을 시찰하고자 유럽의 교도소를 방문키로 함

3)계속 소년보호시설 개소를 위해 연구하기로 함

7. 제6차 위원회의

- 1] 일시 및 장소 : 1996년 7월 26일(금) 오전7시, 한기총 사무실
- 2] 주제발표
 - 1) 발제 : "기독교교도소' 구상의 구체화 방안"
 - 2) 발제자 : 김상철 변호사(전서울시장)
- 3] 회무처리
 - 1) 간담회 추진 의결 : 1996년 10월 11일
 - 2) 관계관청과 접촉하기로 함
 - 3) '기독교교도소'와 관계되는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기로 함
 - 4) 다른 종교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함

8.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을 위한 워크숍

- 1] 일시 및 장소 : 1996년 10월 11일(금) 오전7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
- 2] 워크숍
 - 1)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 경과보고 : 정언택 장로
 - 2) 휴마이타교도소 관련 미디오 시청
 - 3) 한국형 기독교교도소 청사진[기독교교정프로그램 「CCP」]
발표 : 위원장 이종윤 목사
 - 4) 자정토론 : 김일수 장로(고려대 법대학장)
김승규 부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
- 5] 자유토론

9. 제7차 위원회의

- 1]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13일(금) 오전7시, 한기총 사무실
- 2] 회의안건 및 회무처리
 - 1)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 및 이사회 전체회의 개최안
 - 2) 청와대에 제시할 기독교교도소한 검토 및 의견

1997년도

10. 청와대 정책2미서실에 관계자료 전달

- 1] 일자 : 1997년 1월 10일(금)
- 2] 내용 : 청와대의 '종교교도소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검토'에 본회 의견을 첨부

11. 제1차 이사회(제8차 전체회의)

1)일시 및 장소 : 1997년 1월 24일(금) 오후5시, 여전도회관 지하그릴

2)결의사항

1)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 정관 채택

2)신임원 선출

이사장-이종윤 목사, 부이사장-김홍도 목사, 최창근 장로, 양인평 장로, 김일수 장로
서기-김상철 장로, 부서기-박재윤 장로, 회계-박래창 장로, 부회계-오정수 장로
실무간사-이상진 목사

12. 제1차 임원회의

1)일시 및 장소 : 1997년 2월 14일(금) 오전7시, 한기총 사무실

2)회무처리

1)청와대, 세계화위원회에 실제적 대화창구를 마련하기로 함

2)소식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기독교교도소 소식'이라 칭하기로 함

3)3월 14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인섭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기로 함

13. 제2차 이사회(제9회 정기회의)

1)일시 및 장소 : 1997년 3월 14일(금) 오후5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

2)주제발표

1)발제 : "선진교정의 현장, 스웨덴 방문기"

2)발제자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3)회무처리

'기독교교도소 소식' 발간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박재윤 박사, 편집위원-김승규 부장검사, 한인섭 교수

실무기획-이상진 목사

14. 각당 대선크리본부에 '사설 종교교도소제도' 제시

1)일자 : 1997년 9월 초순경

2)내용 : 각 대선후보들이 '사설 종교교도소제도'를 수용하고 대선크리본부에 제시하는 것을 요청

15.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대선후보초청 '사설 종교교도소 제도' 도입의사 질의

1)일자 : 1997년 9월 29일~10월 27일

2)내용 : 당 세미나에서 이종윤 목사가 대선후보들에게 '사설 종교교도소제도' 도입의사를 질의하고 모든 후보들은 수용의사를 응답함

16. 3당에 '사설 종교교도소제도' 정책도입 요청

1) 각당 답변서 접수일 : 새정치국민회의-1997년 12월 2일

한나라당-1997년 12월 9일

국민신당-1997년 12월 11일

2) 내용

- ① 각당 정책위원회에 차기정부 집권시 '사설 종교교도소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하여 각당으로부터 공문으로 답변서를 접수함
- ② 각당은 공히 집권시 당 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확인함

17. 제2차 임원회의

1) 일시 및 장소 :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7시, 한기총 회의실

2) 회무처리

- ① 본 위원회의 '사설 종교교도소안'에 대한 각당 대선후보 및 정책위의 정책수용 의사 확인
- ② 내년 상반기 중에 '각당 정책위의장 및 법사위원장, 각당 법사위 간사 초청 간담회' 개최하기로 함
- ③ 내년 중에 기독교교도소 관련 공청회 개최하기로 함

1998년도

18.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제1정책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종교교도소안과 관련자료 전달

1) 일자 : 1998년 3월 중순경

2) 내용 : ① 남궁진 제1정책위원장 앞으로 본 위원회안을 전달

② 남궁진 위원장이 본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와 관련업무 조율

19. 법무부, 민영교도소 도입보고

1) 일자 : 1998년 4월 9일

2) 내용 :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교도소과밀수용 등 문제점 시정지시 및 법무부의 민영교도소제도 도입보고

20. 당정의 민영교도소계획 경향신문 특종보도

1) 일자 : 1998년 4월 27일(월)

2) 내용

- ① 경향신문 1면에 26일 당정협의 내용(민영교도소 도입 추진)에 대한 남궁진 위원

장 언급과 당정이 한기총과 협의할 것 등의 내용 제재

② 1면과 3면에서 본위원회의 추진안 등이 제재

21. 제3차 (확대)임원회의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5월 4일(월) 오전7시, 한기총 회의실

2) 회무처리

- ① 여야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각당 법사위 소속간사 초청 간담회 개최하기로 함
- ② 간담회 후에 이사장단이 법무부 교정국장과 면담하기로 함
- ③ 운영위원회의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함

22. 종교교도소 설립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5월 14일(목) 오전11시, 국회 커민식당

2) 참석자

- ① 국회의원 : 남궁진 의원(국민회의, 제1정책위원장), 이태섭 의원(자민련, 정책위원장),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변정입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장), 최현희 의원(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본위원회 이사)
- ② 본위원회 : 이종윤 목사, 저덕 목사, 양용주 목사, 김상철 장로, 김승규 검사장, 김일수 장로, 박내창 장로, 류재하 목사, 이정찬 목사, 정연택 장로, 이상진 목사

3) 내용

- ① 본위원회, 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 ② 3당에서는 3당 공동발의로 입법추진 합의

23.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1차 특별소위원회의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6월 1일(월) 오후6:30, 교육문화회관 무궁화홀

2) 참석 위원 : 이종윤 목사, 김상철 변호사, 김승규 검사장, 안창호부장검사, 송주석 장로, 박도석 교도소장, 오정수 장로, 류재하 목사, 정연택 장로, 이상진 목사

3) 회무처리

- ① '사립(기독교)교도소 설치검토' 발표(안창호부장검사)
- ② 김승규, 안창호, 정기용 이사 등이 법안을 초안하기로 함
- ③ 운영기금으로 우선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함

24.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2차 특별소위원회의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6월 11일(목) 오전7시, 서울교회

2] 참석 위원 : 이종윤 목사, 김일수 교수, 김상철 변호사, 김승규 검사장, 안창호 부
장검사, 정기용 부장검사, 황교안 부장검사, 박효진 장로, 박내창 장로,
김용진 박사, 이상진 목사

3] 내용 및 회무처리

- ① 텍사스, 휴스턴교도소 방문 비디오 자료 상영 및 설명(김용진 박사)
- ② '사립교도소법(안)' 설명(안창호 부장검사) 및 토론

25. 본위원회 이사 김승규 검사장 법무부장관 면담

- 1] 일자 : 1998년 9월 초
- 2] 내용 : 김승규 이사가 박상천 법부장관을 방문 본위원회 법안과 설치안 보고

26. 이사장, 교정국장 방문면담

- 1] 일자 : 1998년 9월 중
- 2] 내용 : 이사장 이종윤 목사, 이사 김용진 박사, 실무간사 이상진 목사가 교정국장
실로 김경한 교정국장을 방문하여 본 위원회의 종교교도소안 설명

27. 제4차 임원회의

-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9월 11일(금) 오전7시, 서울교회
- 2] 회무처리
 - ① 김승규 이사, 박상천 장관의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일정 보고
 - ② 공청회 일정, 내용 확정

28. 사립(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

-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9월 29일(화) 오후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2] 내용

- ① 발제-1. 사립교도소의 역사성과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사례들(이종윤 목사)
2. 한국기독교교도소의 모델과 이념적 기초(김일수 장로)
- ② 토론 및 질의-남궁진 의원, 함석재 의원, 이상희 의원, 주명수 변호사
- ③ 3당 공동발의로 법률제정하기로 재확인

29. 법무부, '행형법 개정 및 민형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 1]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27일(금) 오후2시, 한국교원총연합회관
- 2] 내용
 - ① 행형법 개정방향, 민형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② 실무간사 이상진 목사 기독교교도소에 대해 설명

30. 제5차 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8년 12월 31일(목) 오전7:30, 한기총 회의실
- 2]회무처리
 -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하고 한국교계와 각기관에 보내기로 함

1999년도**31. 제3차 이사회(제10차 전체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9년 1월 22일(금)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
- 2]회무처리
 - ①운영위원회에 강성모 장로를 선임
 - ②운영기금으로 100억원 우선 조성하기로 함

32. 제6차 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1일(월) 오전7시, 서울교회
- 2]회무처리
 - ①외국교정회사 투자고려 및 타진하기로 함
 - ②한기총 가맹교단별 모금율 요청하기로 함

33. 제7차 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9년 5월 7일(금) 오전7:30
- 2]회무처리
 - 교도소 부지선정을 위해 대한석탄공사 태백기술훈련원 시설을 답사하기로 함

34. 제8차 (확대)임원회의

- 1]일시 및 장소 : 1999년 7월 26일(월) 오전7시, 서울교회
- 2]회무처리
 - ①법무부가 성안한 '民營矯導所등의設置·運營에관한法律(案)'을 검토
 - ②법무부안 4개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기로 함

35. 법무부안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개진

- 1]일자 : 1999년 7월 중
- 2]내용 :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법무부 '교정현대화추진단'에 제출

36. 행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1] 일자 : 1999년 12월 2일(목)
2] 관련내용 : 민영교도소 근거조항 삽입

37. 행정법 개정안 공포

- 일자 : 1999년 12월 28일(화)

38. 「民營矯導所등의設置·運營에관한法律」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일자 : 1999년 12월 28일(화)

2000년도**39. 기독교교도소법제화 감사예배 및 제4차 이사회(제11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0년 1월 25일(화) 오후5시, 여전도회관 회의실

40. 「民營矯導所등의設置·運營에관한法律」 공포

- 일자 : 2000년 1월 28일(금)

41. 법인체구성준비소위원회 회집

- 1]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1일(화) 오전 7:30, 아미가호텔 일식부
2] 참석위원 : 이종윤, 김상철, 박재윤, 정현택, 이상진(위원 중 김일수 불참)
3] 회무처리 : 박재윤 위원이 법인정관을 초안하기로 함

42. 제9차 임원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25일(토) 오전7:30, 한기총 회의실
2] 회무처리 : 사임서를 제출한 이종윤 이사장에게 유임을 권유하기 위하여 조속히 면담하기로 함

43. 제5차 이사회(제12차 전체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00년 4월 27일(목) 오전 7:30, 한기총 회의실
2] 회무처리
 - ① 이종윤 이사장 사표 수리
 - ② 김일수 부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 ③ 이사장 영임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함

한국기독교교도소 연혁(주요내용)

1. 한국에서 기독교교도소 설립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어져오던 끝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1995년 10월 16일(월) 오후6시, 한기총 사무실)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초대 위원장 이종윤 목사)를 설치하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민영교도소 설립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다.
2. 본 위원회에서는 최초의 기독교교도소인 브라질 휴마이타교도소에 대하여 연구하고 미성년범죄자 수용기관, 중간처우의 집 등 경구금시설의 운영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교도작업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 등을 이어 오던 중 1995년 12월 8일(금) 오전7시, 여전도회관 1013호에서 김용진 집사(범죄학 박사, 한동대 협력교수)가 "기독교와 감옥제도·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관"을 통하여 기독교교도소의 전망을 발표하였다.
3. 1996년 3월 29일(금) 오후2시, 여전도회관 2층 강당에서 "형벌과 교정에 관한 성서적 이해"(장신대 구약학, 강사문 교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기독교교도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4. 1996년 10월 11일(금) 오전7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한국형 기독교교도소 청사진(기독교교정프로그램 「CCP」)을 발표(위원장 이종윤 목사)하였다.
5. 1997년 1월 10일(금), 청와대 정책2비서실에 본 위원회의 '종교교도소제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6. 1997년 1월 24일(금) 오후5시, 여전도회관 지하그릴에서 「한국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로 개칭하고 이사회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정관을 채택하였다(제1차 이사회). (신임원 : 이사장-이종윤 목사, 부이사장-김홍도 목사, 죄창근 장로, 양인평 장로, 김일수 장로, 서기-김상철 장로, 부서기-박재윤 장로, 회계-박래창 장로, 부회계-오정수 장로, 실무간사-이상진 목사)
7. 1997년 3월 14일(금) 오후5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한인섭 이사(서울대 법대 교수)의 "선진교정의 현장, 스웨덴 방문기"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8. 1997년 9월 초순에 각 당의 대선기획본부에 '민영종교교도소제도'를 제시하여 각 대선후보들이 '민영종교교도소제도'를 수용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9. 1997년 9월 29일~10월 27일간에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이종윤 목사가 대선후보들을 초청하여 '민영종교교도소제도' 도입의사를 질의하였고 모든 후보들은 수용의사를 응답하였다.
10. 각 당 정책위원회에 차기정부 집권 시 '민영종교교도소제도'에 대한 정책도입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각 당 정책위에서는 공히 집권 시에 당 제도를 정책으

- 로 도입할 것을 공문으로 확인하였다. (각 당의 답변서 접수일 : 새정치국민회의 -1997년 12월 2일, 한나라당-1997년 12월 9일, 국민신당-1997년 12월 11일)
11. 1998년 3월 초순경,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제1정책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종교교도소안과 관련자료를 전달하였다(이상진 목사가 제1정책위의 관계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한 본 안을 남궁진 제1정책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남궁진 위원장이 본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에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당정안으로 가시화함)
12. 1998년 4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교도소과밀수용 등 문제점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법무부는 최초로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13. 1998년 4월 27일(월), 당정의 민영교도소개획이 경향신문에 특종보도 되었다. 경향신문 1면에 26일 당정협의 내용(민영교도소 도입 추진)에 대한 남궁진 위원장의 언급과 당정이 한기총과 협의할 것 등의 내용이 게재되고 3면에서는 본 위원회의 추진안(이상진 목사 작성) 등이 당정안으로 그대로 발표되었다.
14. 1998년 5월 14일(목) 오전11시, 국회 국민식당에서 '종교교도소 설립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 각 당 정책위의장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본 위원회는 민영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을 촉구하였고 3당은 공동발의로 입법추진을 합의하였다.
15. 1998년 6월 1일(월) 오후6:30, 교육문화회관 무궁화홀에서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1차 특별소위원회의'가 열려 「사립(기독교)교도소 설치검토」가 발표(김승규 검사장, 안창호부장검사)되었다.
16. 1998년 6월 11일(목) 오전7시, 서울교회에서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2차 특별소위원회의'가 열려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것을 목표로 작성된 「사립교도소법(안)」이 발표(김승규 검사장, 안창호부장검사)되었다.
17. 1998년 9월 초순경, 본 위원회 이사인 김승규 검사장이 박상천 법무장관에게 본 위원회 법안과 설치안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계기로 민영교도소 사업이 법무장관 지시사항으로서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급진전됨)
18. 1998년 9월 29일(화) 오후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민영(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영교도소의 역사성과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사례들"(이사장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교도소의 모델과 이념적 기초"(부이사장 김일수 장로)의 주제발표와 남궁진 의원, 함석재 의원, 이상희 의원, 주명수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으며, 3당은 공동발의로 관계법률을 제정하기로 재확인하였다.
19. 1998년 11월 27일(금) 오후2시, 한국교원총연합회관에서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 및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본 위원회 실무간사 이상진 목사 기독교교도소에 대해 설명하였다.
20. 1999년 1월 22일(금)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

가 개최되었다.

21. 1999년 7월 26일(월) 오전7시, 서울교회에서 제8차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법무부가 성안한 「民營矯導所 등의設置·運營에 관한法律(案)」을 검토하고 법무부안 4개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 '교정현대화추진단'에 접수하였다.
22. 1999년 12월 2일(목), 민영교도소 근거조항이 삽입된 행형법(민영교도소 관계법의 모법이 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3. 1999년 12월 28일(화), 기독교교도소의 근거법인 「民營矯導所 등의設置·運營에 관한法律」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4. 2000년 1월 25일(화) 오후5시, 여전도회관 회의실에서 '기독교교도소법제화 감사예배 및 제4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25. 2000년 1월 28일(금), 정부는 「民營矯導所 등의設置·運營에 관한法律」을 공포하였다.
26. 2000년 4월 27일(목),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직을 사임한 이종윤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民營矯導所 등의 設置·運營에 관한 法律』의 입법 의의

1. 80년대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시행되면서 교정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하게 되었다. 형벌우선주의에서 교정교화우선주의로, 형벌 우선에 의한 행형 국가특점에서 교정교화 우선에 의한 민간의 참여로, 교도소의 폐쇄적 운영과 재소자의 고립화에서 교도소의 개방화와 재소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사회화의 제도화와 교정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그것이며 21세기에는 민영교도소가 이 변화들을 주도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미국은 민영교도소를 길지 않은 기간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장점을 얻어냄으로 제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정부와 민간의 계약 하에서 민영교도소가 운영되며 주마다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주로 각주의 법이나 각주의 행형법 속에 근거조항을 둘으로 민영교도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미국식 민영교도소가 호주나 유럽으로 서서히 넓혀져 가고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입법화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직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단독 법률을 제정하여 민영교도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책으로 그리고 국민적 사업으로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됨으로 다른 나라보다 성공요인이 크며 사회적으로 넓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1999년 12월 28일 우리나라에서의 민영교도소 특별법 제정은 한국교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적 접근에 의한 확실성을 정부에 보였으며, 실무진이 정부의 관계 기관과 대등하게 실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교계와 정부가 함께 이루어낸 역사적 패거'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도소의 교정프로그램(CCP, Christian Correctional Program) 내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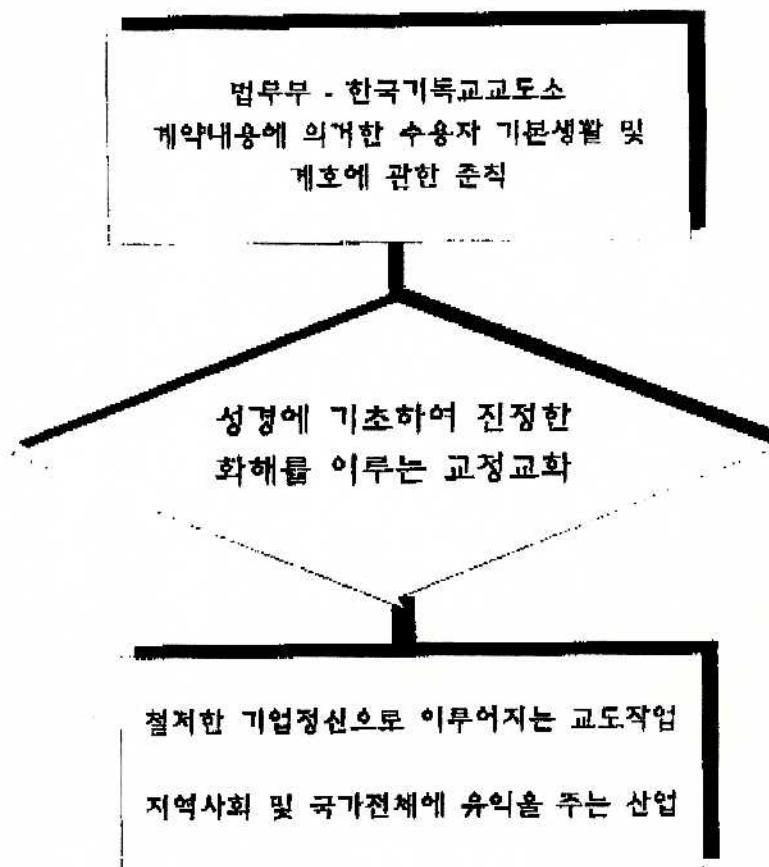
CCP는 다음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된다.

1. 효과적인 교정교화
2. 국가와 사회에 영적/경제적 기여
3.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운용된다.

1. 한국기독교교도소의 최대 수형인원을 350명 정도로 한다. 이 중 200명은 일반 수형자로 150명은 잔여 형기를 2년 미만 남겨 놓은 수형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저한 성경적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침 5시 새벽경건회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 8시간의 교도작업을 마친 후 저녁 시간대에는 체계적인 기독교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한국기독교교도소가 모델로 삼는 브락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미국의 Prison Fellowship에서 설립한 이너체인지(Inner-Change) 교도소(아직 시행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호와 캔사스의 기독교교도소도 좋은 모델임)와 같이 출소자의 평균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유지하여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 또한 복음으로 범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타 인본주의적/징벌주의적 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효과성을 실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교도작업에 혁신적 개선을 가해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는 산업시설을 가동하여 재소자의 기술향상과 출소 후 사회적응을 돋운다. 재소자 300여명의 하루 8 시간을 교도작업에 투입할 경우 발생하는 하루 총 2,400 시간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소득으

로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확대재생산한다. 특히 재소자 각인이 수형생활 중 피부양가족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보내어 가정의 회복과 가족과의 유대를 개선시키며 또한 소정의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성경적, 사회적 화해의 주체가 되게 한다.



한국기독교교도소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은

1. 제호 및 체소자 기본생활 : 법무부 교정당국의 세부적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정해질 것이다.
2. 교정교화 프로그램 : 미국 Prison Fellowship에서 수년간 운영한 Inner-Change Freedom Initiative, Inc.와 아이호아, 캔사스 등의 프로그램을 주된 모델로 시작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나아가 외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도작업 :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장애인 재활용품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장애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고가의 재활용구를 장만할 수 있도록 제반 장애자 재활용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등 가능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한다.

한국기독교교도소 청사진 및 준비단계의 기본전략

1. 한국기독교교도소 기본정신

○和解(Reconciliation)와 和平(Peace)

2. 기독교적 사회공동체화해운동(프로그램) · 기독교교정프로그램 · 한국기독교교 도소

① 「기독교교도소」는 형성단계부터 단순한 교도소 정황과 시설에 국한하는 프
로그램에서 초월하여 기독교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대검찰청에서 기획하고 시행 중에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은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관련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도 시민운동 · 사회운동 차원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여
겨진다. 앞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역할도 정부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넘어
서 선진적인 시민운동 · 사회운동의 차원을 충족하는 역할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근래 법무부에 '법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가 발족하였는데 국민운동으로 승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연대하고 사회운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조화를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주도의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수행하던 프로그램들이 시
민운동 · 사회운동의 내용을 수용하며 성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사회에는 선진 시민운동 · 사회운동이 그 기능상에서 충실히 해야 한다는 필연
성과 건실한 시민운동 · 사회운동이야말로 당연히 사회적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하
겠다. 더구나 대범죄(對犯罪) 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과 사회의 합의는 물론 활발한
국민적 통참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므로 「기독교교도소」 야말로 이와 같
은 여건 위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② 대전제로서의 '범죄없는 사회만들기 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으로 '거짓없는 사회만들기 운동', '밝은 청소년문화 운동', '청소년 범죄방지 운동',
'청소년이 참여하는 화해운동', '범죄피해자 보살피기 프로그램' 등 기독교 사회공동
체화해운동(기독교적 범죄예방시스템, 범죄 및 사회병리현상 치유프로그램 중심) 및
관련되는 기독교사회운동 위에 기독교교정프로그램과 기독교교도소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